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23

발의연월일: 2022. 7. 22.

발 의 자: 박성중·하영제·황보승희

김상훈 · 김영식 · 유의동

이주환 • 박대출 • 강기윤

윤영석 · 김용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 는데, 이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의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다른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 로, "100분의 6"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8"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16"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 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 기업은 100분의 16)에 상 당하는 금액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7년 12월 31일
<u>100분의 30</u>
<u>100분의 40</u>
<u>100분의 50</u>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